

소 장

원 고 1. 배호숙(551110-*****)
2. 임한희(800409-*****)
원고 1, 2의 주소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583-15 (선흘리)
3. 임한국(820605-*****)
서울 서초구 방배로25길 42-17, 301호 (방배동)
4. 임을원(840219-*****)
제주시 신대로 152, 502호 (연동, 연동에이스아크로빌3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205,206호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담당변호사: 정찬우, 서현주
(전화: 02-733-1128 팩스: 02-733-1129)

피 고 1. 임영구
2. 백명순
3. 임현경
피고들 주소 제주시 조천읍 우진길 38-214 (선흘리)

유류분반환

청 구 취 지

1. 피고 임영구는,
가. 원고 배호숙, 임한희, 임한국에게, 각,
1) 이 사건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242,706/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2.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27,498,29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4.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47,751,562/342,997,5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3.기재 토지 중 15,738,64



0/113,05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2) 27,319,789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임울원에게,

- 1) 이 사건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273,841/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2.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31,025,75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4.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53,877,096/342,997,5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3.기재 토지 중 17,757,581/113,05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30,824,351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백명순은,

가. 원고 배호숙, 임한희, 임한국에게, 각,

- 1) 이 사건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242,706/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2.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27,498,29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4.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47,751,562/342,997,5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5,067,264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임울원에게,

- 1) 이 사건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273,841/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2.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31,025,75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4.기재 토지의 1/2지분 중 53,877,096/342,997,5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5,717,288원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임현경은,

가. 원고 임한국에게 2,171,684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임울원에게 2,450,266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가.2)항, 제1.나.2)항, 제2.가.2)항, 제2.나.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I. 피상속인 망 임상구의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피상속인 망 임상구는 2021. 8. 31. 사망하였으며(갑 제1호증의1~3, 망 임상구의 기본증명서 등)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배효숙(갑 제2호증의1~3, 배효숙의 기본증명서 등), 자식들인 원고 임한희(갑 제3호증의1~3, 임한희의 기본증명서 등), 원고 임한국(갑 제4호증의1~3, 임한국의 기본증명서 등), 원고 임을원(갑 제5호증의1~3, 임을원의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련하여, 피상속인 망 임상구가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8-5 대 797㎡(갑 제6호증의1, 1948-5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브릭조 스투트지붕단층주택(갑 제6호증의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8-7 임야 2,687㎡ 중 687/2687지분(갑 제7호증, 1948-7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8-9 임야 998㎡ 중 398/998지분(갑 제8호증, 1948-9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3 전 421㎡(갑 제9호증, 1949-3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재산으로 총 41,142,542원(갑 제10호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렉스틴 스포츠(자동차등록번호 : 94가0824, 갑 제11호증,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습니다.

원고 배효숙은 2021.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



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갑 제6호증의1~제9호증), 2021. 1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렉스틴 스포츠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II.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x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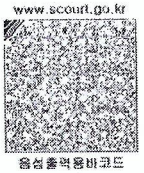
가. 적극적 상속재산

피상속인인 망 임상구는 2021. 8. 31.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금융재산, 렉스틴 자동차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의 가액]

재산의 종류	구체적인 재산의 현황	재산 가액(원)	비고
부동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1948-5 대 797㎡ (갑 제6호증의1)	134,055,400 (=168,200 x 797)	갑 제12호증 (개별공시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1948-5 브릭조 스투리지방단층주택 99㎡(갑 제6호증의2)	300,000,000	갑 제13호증 (실거래가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8-7 임야 2687㎡에 관한 687/2687 지분(갑 제7호증)	26,793,000 (=39,000 x 2,687 x 687/2687)	갑 제14호증 (개별공시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8-9 임야 998㎡에 관한 398/998지분(갑 제8호증)	19,780,600 (=49,700 x 998 x 398/998)	갑 제15호증 (개별공시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9-3 전 421㎡(갑 제9호증)	33,722,100 (=80,100 x 421)	갑 제16호증 (개별공시지가)
	소계	514,351,100	
금융자산	지역 농축협 351-1028-4126-93	743,424	갑 제10호증
	지역 농축협 178411-52-111330	6,811	갑 제10호증
	지역 농축협 356-1218-9056-13	21,409	갑 제10호증
	지역 농축협 901055-52-009996	30,921,931	갑 제10호증
	NH농협은행 961-024-05995	7,498	갑 제10호증
	NH농협은행 3020-7126-44031	2	갑 제10호증
	제주은행 150-208-8815	600	갑 제10호증
	제주은행 330-206-9363	12,340	갑 제10호증
	NH투자증권 3000-144-7757	7,288	갑 제10호증
	새마을금고중앙회 900-3235-289502	48,599	갑 제10호증
	지역 농축협 9010-5500-01672	7,605,380	갑 제10호증
	지역 농축협 1784-11000-1052	1,519,127	갑 제10호증
	산림조합중앙회 9010-100-2383	248,133	갑 제10호증



	소계	41,142,542	
자동차	렉스턴스포츠 94가0824	12,540,000	갑 제11호증
총합		568,033,642	

나. 증여액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1114조 후단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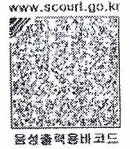


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당시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함이 타당하고, 현재가액은 [증여액 x 상속개시 시 GDP 디플레이터 / 증여 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합니다. 201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100으로 하여 산정한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자료1, GDP 디플레이터)

연도	2011	2013	2014	2015	2017	2021
수치	93.898	96.042	96.913	100	104.253	108.417

한편,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아니지만 망 임상구가 피고들에게 위 재산을 증여해줄 당시인 2017년경은 65세로서 이미 정년 퇴임을 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때였고, 피고 임영구가 증여세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 결혼, 노후 자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고 과거 약속한 것처럼 토지를 매도한 금액 중 일부를 저에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갑 제26호증, 금전대차계약 관련 소명자료). 피고 임영구가 망 임상구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 토지 외에



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어려워 특별한 소득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워 자녀 결혼, 노후 자금 등을 위해 토지들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망 임상구로부터 토지들을 증여받거나 현금을 받을 당시 망 임상구로부터의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증여받은 토지들과 현금을 모두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인 증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증여(갑 제17호증, 망 임상구의 현금증여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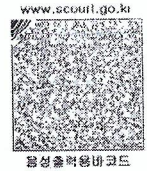
(가) 원고 배효숙에 대한 증여

원고 배효숙은 임상구로부터 2014. 11. 28. 20,000,000원, 2017. 4. 21. 5,000,000원, 15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총 175,0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원고 배효숙이 증여받은 위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 환산액(원) ¹⁾
1	2014. 11. 28.	20,000,000	$20,000,000 \times 108.417 / 96.913$	22,374,088
2	2017. 4. 21.	155,000,000	$155,000,000 \times 108.417 / 104.253$	161,190,900
합계		175,500,000		183,564,988

(나) 원고 임한희에 대한 증여

1) 소수점 이하 버림



망 임상구는 2021. 3. 29. 원고 임한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8-7 임야 2,687㎡에 관하여 2,000/2,687 지분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8-9 임야 998㎡에 관하여 600/998 지분을 각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 바, 원고 임한희는 임상구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1948-7 임야의 상속개시시점 개별공시지가는 39,000원/㎡, 위 1948-9 임야의 상속개시시점 개별공시지가는 49,700/㎡이므로 원고 임한희는 위 1948-7 임야의 2,000/2,687 지분 상당액 78,000,000원, 위 1948-9 임야의 600/998 지분 상당액인 29,82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한희는 임상구로부터 총 180,119,089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 환산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 환산액(원) ²⁾
1	2011. 12. 3.	5,000,000	5,000,000x108.417/93.898	5,773,126
2	2013. 12. 3.	30,075,797	30,075,797x108.417/96.042	33,951,059
3	2013. 12. 3.	20,050,531	20,050,531x108.417/96.042	22,634,039
4	2013. 12. 3.	20,042,761	20,042,761x108.417/96.042	22,625,268
5	2014. 8. 11.	10,000,000	10,000,000x108.417/96.913	11,187,044
6	2014. 9. 16.	10,000,000	10,000,000x108.417/96.913	11,187,044
7	2014. 9. 16.	10,000,000	10,000,000x108.417/96.913	11,187,044
8	2014. 9. 18.	19,000,000	19,000,000x108.417/96.913	21,255,383
9	2015. 1. 29.	6,000,000	6,000,000x108.417/100	6,505,020
10	2017. 4. 12.	18,000,000	18,000,000x108.417/104.253	18,718,943
11	2017. 4. 12.	18,000,000	18,000,000x108.417/104.253	18,718,943
12	2017. 4. 13.	14,000,000	14,000,000x108.417/104.253	14,559,178
합계		180,169,089		198,302,091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임한희가 임상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위와 같고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하면, 총 306,122,091원(=78,000,000원 + 29,820,000원 + 198,302,091원)을 특별수익하였습니다.

(다) 원고 임한국에 대한 증여

원고 임한국은 임상구로부터 총 77,99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 환산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 환산액(원) ³⁾
1	2013. 10. 7.	9,990,000	$9,990,000 \times 108.417 / 96.042$	11,277,210
2	2014. 9. 18.	18,000,000	$18,000,000 \times 108.417 / 96.913$	20,136,679
3	2017. 4. 12.	18,000,000	$18,000,000 \times 108.417 / 104.253$	18,718,943
4	2017. 4. 12.	18,000,000	$18,000,000 \times 108.417 / 104.253$	18,718,943
5	2017. 4. 13.	14,000,000	$14,000,000 \times 108.417 / 104.253$	14,559,178
합계		77,990,000		83,410,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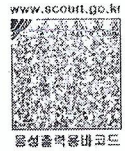
(라) 원고 임을원에 대한 증여

원고 임을원은 임상구로부터 55,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 환산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 환산액(원) ⁴⁾
1	2014. 4. 28.	5,000,000	$5,000,000 \times 108.417 / 96.913$	5,593,522

2) 소수점 이하 버림

3) 소수점 이하 버림



2	2017. 4. 12.	18,000,000	18,000,000x108.417/104.253	18,718,943
3	2017. 4. 12.	18,000,000	18,000,000x108.417/104.253	18,718,943
4	2017. 4. 13.	14,000,000	14,000,000x108.417/104.253	14,559,178
합계		55,000,000		57,590,586

(마) 소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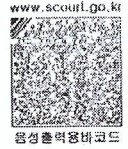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임상구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총 630,688,618원입니다.

(3)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증여

(가) 피고 임영구에 대한 증여

피고 임영구는 2017. 5. 23. 임상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8-12 입야 119㎡에 관한 1/2지분(갑 제18호증, 1948-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하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이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 전 7,302㎡에 관한 1/2지분(갑 제19호증, 194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하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이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2 대 595㎡(갑 제20호증, 1949-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하 ‘이 사건 제3증여 부동산’이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8 전 8,265㎡에 관한 1/2지분(갑 제21호증, 1949-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하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4) 소수점 이하 버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 임영구는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임상구로부터 총 188,7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갑 제17호증) 그 구체적인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 환산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증여재산 부동산들 및 돈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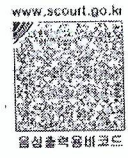
[증여받은 부동산들]

순번	증여재산 부동산들의 표시	상속개시당시 시가(원)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8-12 임야 119㎡에 관한 1/2지분(갑 제18호증)	1,743,350 (=29,300 x 119 x 1/2)	갑 제22호증 (개별공시지가)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 전 7,302㎡에 관한 1/2지분(갑 제19호증)	197,519,100 (=54,100 x 7,302 x 1/2)	갑 제23호증 (개별공시지가)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2 대 595㎡(갑 제20호증)	113,050,000 (=190,000 x 595)	갑 제24호증 (개별공시지가)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8 전 8,265㎡에 관한 1/2지분(갑 제21호증)	342,997,500 (=83,000 x 8,265 x 1/2)	갑 제25호증 (개별공시지가)
합계		655,309,950	

[증여받은 돈, 갑 제17호증]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 환산액(원) ⁵⁾
1	2017. 7. 19.	19,000,000	19,000,000x108.417/104.253	19,758,884
2	2017. 8. 21.	19,000,000	19,000,000x108.417/104.253	19,758,884
3	2017. 8. 23.	100,000,000	100,000,000x108.417/104.253	103,994,129
4	2017. 8. 23.	50,700,000	50,700,000x108.417/104.253	52,725,023
합계		188,700,000		196,236,920

5) 소수점 이하 버림



피고 임영구가 임상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 합계는 851,546,870원이 됩니다.

(나) 피고 백명순에 대한 증여

피고 백명순은 2017. 5. 23. 임상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8-12 임야 119㎡에 관한 1/2지분(갑 제18호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9 전 7,302㎡에 관한 1/2지분(갑 제19호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9-8 전 8,265㎡에 관한 1/2지분(갑 제21호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 백명순은 2017. 7.~8. 경까지 임상구로부터 총 35,0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갑 제17호증).

위 증여재산 부동산들과 증여받은 돈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순번	증여재산 부동산들의 표시	상속개시당시 시가(원)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8-12 임야 119㎡에 관한 1/2지분(갑 제18호증)	1,743,350 (=29,300 x 119 x 1/2)	갑 제22호증 (개별공시지가)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9 전 7,302㎡에 관한 1/2지분(갑 제19호증)	197,519,100 (=54,100 x 7,302 x 1/2)	갑 제23호증 (개별공시지가)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949-8 전 8,265㎡에 관한 1/2지분(갑 제21호증)	342,997,500 (=83,000 x 8,265 x 1/2)	갑 제25호증 (개별공시지가)
합계		542,259,950	



[증여받은 돈]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 환산액(원) ⁶⁾
1	2017. 7. 19.	17,000,000	$17,000,000 \times 108.417 / 104.253$	17,679,002
2	2017. 8. 21.	18,000,000	$18,000,000 \times 108.417 / 104.253$	18,718,943
합계		35,000,000		36,397,945

피고 백명순이 임상구로부터 위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 합계는 578,657,895원입니다.

(다) 피고 임현경에 대한 증여

피고 임현경은 2017. 6. 1. 임상구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환산식	상속개시당시 환산액(원) ⁷⁾
1	2017. 6. 1.	15,000,000	$15,000,000 \times 108.417 / 104.253$	15,599,119
합계		15,000,000		15,599,119

(라) 소 결

공동상속인들이 아닌 위 피고 임영구, 백명순, 임현경은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임상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총 1,445,803,884원입니다.

6) 소수점 이하 버림

7)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합계액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은 2,644,526,144원
 (=568,033,642(적극적 상속재산) + 630,688,618(원고들의 수증액)+
 1,445,803,884(피고들의 수증액))

2.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및 유류분액(A x B)

원고들의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A)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B)	유류분액(A x B)
원고 배호숙	2,644,526,144원	1/3	1/6	440,754,357원
원고 임한희	2,644,526,144원	2/9	1/9	298,836,238원
원고 임한국	2,644,526,144원	2/9	1/9	298,836,238원
원고 임을원	2,644,526,144원	2/9	1/9	298,836,238원

3.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분액(D)

가.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원고 배호숙은 183,564,988원, 원고 임한희는 306,122,091원, 원고 임한국은 83,410,953원, 원고 임을원은 57,590,586원의 각 특별수익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나.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원고 임한희, 임한국, 임울원은 위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을 각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임한희, 임한국, 임울원의 순상속분액은 각 9,142,787원(=41,142,542 x 2/9, 소수점 버림)입니다.

원고 배효숙은 위 상속재산 중 각 부동산 및 렉스턴 자동차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예금채권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배효숙의 순상속분액은 540,605,181원(=514,351,100 + 12,540,000 + 13,714,181원(소수점 버림))입니다.

4. 각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A x B - C - D)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유류분액(A x B)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액 (A x B - C - D)
원고 배효숙	440,754,357원	183,564,988원	540,605,181원	-283,415,811원
원고 임한희	298,836,238원	306,122,091원	9,142,787원	-21,428,640원
원고 임한국	298,836,238원	83,410,953원	9,142,787원	201,282,498원
원고 임울원	298,836,238원	57,590,586원	9,142,787원	227,102,865원

5.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및 범위

가. 유류분 반환액 산정방법 및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액

(1) 관련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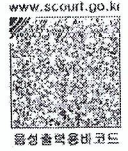
대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반환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 임영구의 유류분반환비율은 $851,546,870/1,445,803,884$ [=피고 임영구에 대한 증여가액 851,546,870 / 851,546,870 + 피고 백명순에 대한 증여가액 578,657,895 + 피고 임현경에 대한 증여가액 15,599,119]입니다.

피고 백명순의 유류분반환비율은 $578,657,895/1,445,803,884$ [=피고 백명순에 대한 증여가액 578,657,895 / 피고 임영구에 대한 증여가액 851,546,870 + 578,657,895 + 피고 임현경에 대한 증여가액 15,599,119]입니다.

피고 임현경의 유류분반환비율은 $15,599,119/1,445,803,884$ [=피고 임현경에 대한 증여가액 15,599,119 / 피고 임영구에 대한 증여가액 851,546,870 + 피고 백명순에 대한 증여가액 578,657,895 + 15,599,119]입니다.



(3)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액

	① 유류분 부족액	반환의무자	②반환비율	유류분반환액(①x②)
원고 임한국	201,282,498원	피고 임영구	851,546,870/1,445,803,884	118,550,990
		피고 백명순	578,657,895/1,445,803,884	80,559,824
		피고 임현경	15,599,119/1,445,803,884	2,171,864
원고 임을원	227,102,865원	피고 임영구	851,546,870/1,445,803,884	133,758,621
		피고 백명순	578,657,895/1,445,803,884	90,893,978
		피고 임현경	15,599,119/1,445,803,884	2,450,266

나. 피고들의 반환방법

(1) 관련법리

대법원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피고 임영구와 백명순은 각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고 피고 임현경은 현금을 증여받은 바,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물반환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피고 임영구와 백명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 가액과 가액반환대상인 현금 등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청구하고, 피고 임현경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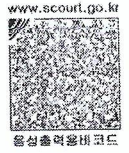


(2) 원고 임한국에 대해서

피고	① 유류분 반환액(원)	②수증액		부동산 원물반환 금액 (① X ③/②)	현금반환금액 (①X④/②)
		③부동산	④현금		
임영구	118,550,990	851,546,870		91,231,201	27,319,789
		655,309,950	196,236,920		
백명순	80,559,824	578,657,895		75,492,560	5,067,264
		542,259,950	36,397,945		
임현경	2,171,864	15,599,119			2,171,684
			15,599,119		

(3) 원고 임을원에 대해서

피고	① 유류분 반환액(원)	②수증액		부동산 원물반환 금액 (① X ③/②)	현금반환금액 (①X④/②)
		③부동산	④현금		
임영구	133,758,621	851,546,870		102,934,270	30,824,351
		655,309,950	196,236,920		
백명순	90,893,978	578,657,895		85,176,690	5,717,288
		542,259,950	36,397,945		
임현경	2,450,266	15,599,119			2,450,266
			15,599,119		



다. 이 사건 증여 부동산들의 반환 지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할 이 사건 증여 부동산들의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1) 원고 임한국에 대해서

반 환 의 무 자	① 원물반환금액	이 사건 증여부동산들				
		내용	②가액(원)	③반환비율 (②/②합계)	④반환액 (①X③)(원)	반환할 지분 (④/②)
임영구	91,231,201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	1,743,350	1,743,350/ 655,309,950	242,706	242,706/ 1,743,350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	197,519,100	197,519,100/ 655,309,950	27,498,293	27,498,293/ 197,519,100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	342,997,500	342,997,500/ 655,309,950	47,751,562	47,751,562/ 342,997,500
		이 사건 제3증여 부동산	113,050,000	113,050,000/ 655,309,950	15,738,640	15,738,640/ 113,050,000
합계		655,309,950				
백명순	75,492,560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	1,743,350	1,743,350/ 542,259,950	242,706	242,706/ 1,743,350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	197,519,100	197,519,100/ 542,259,950	27,498,293	27,498,293/ 197,519,100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	342,997,500	342,997,500/ 542,259,950	47,751,562	47,751,562/ 342,997,500
합계		542,259,950				



(2) 원고 임울원에 대하여

반 환 의 무 자	① 원물반환금 액	이 사건 증여부동산들				
		내용	②가액(원)	③반환비율 (②/②합계)	④반환액 (①X③)(원)	반환할 지분 (④/②)
임영구	102,934,270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	1,743,350	1,743,350/ 655,309,950	273,841	273,841/ 1,743,350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	197,519,100	197,519,100/ 655,309,950	31,025,753	31,025,753/ 197,519,100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	342,997,500	342,997,500/ 655,309,950	53,877,096	53,877,096/ 342,997,500
		이 사건 제3증여 부동산	113,050,000	113,050,000/ 655,309,950	17,757,581	17,757,581/ 113,050,000
합계			655,309,950			
백명순	85,176,690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	1,743,350	1,743,350/ 542,259,950	273,841	273,841/ 1,743,350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	197,519,100	197,519,100/ 542,259,950	31,025,753	31,025,753/ 197,519,100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	342,997,500	342,997,500/ 542,259,950	53,877,096	53,877,096/ 342,997,500
합계			542,259,950			

6. 소 결

가. 원고 임한국에 대한 반환



원물반환으로 원고 임한국에게 피고 임영구는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의 1/2 지분 중 242,706/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27,498,29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47,751,562/342,997,5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증여 부동산 중 15,738,640/113,05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물반환으로 원고 임한국에게 피고 백명순은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242,706/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27,498,29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47,751,562/342,997,5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액반환으로 원고 임한국에게 피고 임영구는 27,319,789원, 피고 백명순은 5,067,264원, 피고 임현경은 2,450,266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임울원에 대하여

원물반환으로 원고 임울원에게 피고 임영구는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의 1/2 지분 중 273,841/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31,025,75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4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53,877,096/342,997,5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증여 부동산 중 17,757,581/113,05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고 임울원에게 피고 백명순은 이 사건 제1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273,841/1,743,35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31,025,753/197,519,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증여 부동산의 1/2지분 중 53,877,096/342,997,5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액반환으로 원고 임을원에게 피고 임영구는 30,824,351원, 피고 백명순은 5,717,288원, 피고 임현경은 2,450,266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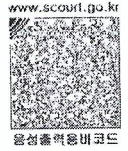
다. 원고 배효숙과 원고 임한희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위 부동산들의 감정평가를 할 경우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며, 특히 피고들이 받은 증여재산들의 감정가액이 매우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 배효숙과 임한희는 최소한 원고 임한국의 유류분부족액 이상으로 유류분이 침해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III. 결 론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망 임상구의 기본증명서
2. 갑 제1호증의 2 망 임상구의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1호증의 3 망 임상구의 말소자초본 및 등본
4. 갑 제2호증의 1 배효숙의 기본증명서
5. 갑 제2호증의 2 배효숙의 가족관계증명서
6. 갑 제2호증의 3 배효숙의 주민등록등초본
7. 갑 제3호증의 1 임한희의 기본증명서
8. 갑 제3호증의 2 임한희의 가족관계증명서
9. 갑 제3호증의 3 임한희의 주민등록등초본
10. 갑 제4호증의 1 임한국의 기본증명서
11. 갑 제4호증의 2 임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12. 갑 제4호증의 3 임한국의 주민등록등초본
13. 갑 제5호증의 1 임울원의 기본증명서
14. 갑 제5호증의 2 임울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5. 갑 제5호증의 3 임울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6. 갑 제6호증의 1 1948-5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7. 갑 제6호증의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8. 갑 제7호증 1948-7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9. 갑 제8호증 1948-9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 갑 제9호증 1949-3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1. 갑 제10호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22. 갑 제1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23. 갑 제12호증 개별공시지가
24. 갑 제13호증 개별공시지가
25. 갑 제14호증 개별공시지가
26. 갑 제15호증 개별공시지가



- | | |
|-------------|-------------------|
| 27. 갑 제16호증 | 개별공시지가 |
| 28. 갑 제17호증 | 망 임상구의 현금증여 내역 |
| 29. 갑 제18호증 | 1948-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30. 갑 제19호증 | 194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31. 갑 제20호증 | 1949-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32. 갑 제21호증 | 1949-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33. 갑 제22호증 | 개별공시지가 |
| 34. 갑 제23호증 | 개별공시지가 |
| 35. 갑 제24호증 | 개별공시지가 |
| 36. 갑 제25호증 | 개별공시지가 |
| 37. 갑 제26호증 | 금전대차계약 관련 소명자료 |

첨 부 서 류

1. GDP 디플레이터
2. 소송위임장
3. 소가계산서

2023.11.2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서현주

제주지방법원 귀중